

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6년 9월 6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3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2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6.9. 6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은수 복지환경국장)

가. 상정 이유

출생신고시 정부 3.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,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'정부 3.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 시행에 따라 임신·출산 관련

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자부 규정에 따른 서식 활용을 위한 규정 개정(안 제5조제2항)

2)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 취지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출산지원금 대상자 조건완화로 저출산·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검토 내용

-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한, 정부 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사업이 2016. 3. 31.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, 출산양육관련 지원신청시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I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
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

- 국민의 중요한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패키지로 제공
⇒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하던 불편 해소
- 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 정부가 선제적 안내
⇒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

□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의 사전안내 및 통합신청

- (사전안내) 임신 준비 중 또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시까지 공공기관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신·출산 서비스 정보를 사전 안내
- (통합신청) 출산자(산모)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·처리

[출산 관련 급부 원스톱 처리 흐름도]



관 계 법 령

□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6.3.31.] [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, 2016.3.10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공공서비스혁신과), 02-2100-4065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출산서비스 통합처리”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자(산모)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·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(이하 “통합처리”라 한다.)
2. ~ 3. (생략)

제4조(통합처리)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·면·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

제5조 (생략)

제6조(통합처리 신청 접수) ① 접수담당자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출생사실, 가족관계, 주민등록사항 및 출산자(산모)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접수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.

②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자(대리 신청자) 신분증
 2. 출생증명서(출생신고 완료로 대신함)
 3. 가족관계증명서(내부 확인 시에는 제출 생략)
 4. 주민등록등본(내부 확인 시에는 제출 생략)
 5. 서비스(급여)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
 6. 전기료·도시가스료·지역난방비의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고객번호
- ③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읍·면·동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. 다만,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접수담당자가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다.

제7조(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) ① 접수담당자는 제1호 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,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② 접수담당자는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(기관)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.

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·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, 지침(사업안내서, 매뉴얼 등), 조례·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.

제8조(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)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

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.

③ 「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19호, 2015.7.1.) 제2조에도 불구하고, 이 규정 제1조에 의한 양육수당 신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 ~ 제10조 (생략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론 요지 :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

6. 수정안의 요지 : “별첨”

7. 심사 결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